[논 문]

전자투표제도의 의무화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 검토

박 은 영*

≪차 례≫

Ⅰ. 서 론
Ⅱ. 전자투표제도에 관한 상법개정 논의
Ⅲ. 전자투표제도 의무화 필요성
Ⅳ. 결론에 대신하여: 의사결정과정에서 실질적인 주주의 참여방안 마련

Ⅰ. 서 론

경제가 고도화되면서 기업에 투자하는 주체도 다양해지고 있다. 과거 우리나라 기업은 소유 경영자 및 그 가족중심에 의해 지배되고 있었으나, 이러한 경향은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상호지분보유, 개인투자, 기관투자 등 복잡하게 기업지배구조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1] 재벌이라고 불리는 대기업집단은 일부 대주주의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지만 실제 다양한 주주들에 의하여 소유되고 있다.[2] 주주는 대주주, 개인주주, 외국인, 기관투자자 등으로 구성된다.

* 동아대학교 석당인재학부 조교수, 법학박사

1) 박종인, "기업지배구조와 이익조정: 최대주주 지분율을 중심으로", 회계학연구 제28권 제2호, 한국회계학회, 2003.6, 135-136면 참조.

기관투자자는 국내 다수 상장기업의 주식을 대규모로 보유하는 주요주주 또는 최대주주의 지위에 있다.[3] 그러나 이들은 상장기업 사이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내부조직의 한계 등으로 투자기업의 의사결정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4] 증권시장의 3대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외국인, 기관, 개인 중 외국인의 국내증시영향력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직접투자의 비중도 늘고 있는 추세이다.[5] 2018년 2월 말 기준 외국인의 상장주식 보유규모는 약 621조원에 달한다.[6] 이렇듯 외국인 투자액이 커지면서 한국 증시에 투자하는 외국인 개인투자자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7] 또한 주식시장에서 개인투자자의 비중은 약 20% 수준이다.[8]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의 지배구조는 과거와 달리 복잡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영참여의 중요한 요소인 주주총회의 의결권 행사를 활성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항이 되었다. 따라서 우리 상법은 주주총회의 운영방법을 정비하기 위해 주주가 현장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않고도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서면투표제도를 규정하였다.[9] 또한 기술의 변화를 받아들여 서면 외에 전자적 방법을 통하여 주주가 총회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2009년 개정된 상법에 도입하였다.

그러나 실제 전자투표를 도입한 기업은 많지 않다.[10] 전자투표로 인하여

---

2) 송종희, 홍승표, 이헌상, “금융위기 전후 한국 상장기업의 자본구조 변화에 대한 연구”, 산업경제연구 제31권 제1호, 2018.2, 133-134면 참조.

3) 강윤식, 위경우, “국민연금기금의 효율적 주주권 행사 방안”, 기업지배구조리뷰, 제79권 제2호, 한국기업지배구조원, 2015, 6면 참조.

4) 권종호, “엘리엇 사태에 비추어 본 기관투자자의 의결권행사의 쟁점 – 국민연금의 의결권행사와 스튜어드십 코드를 소재로-”, 경영법률, 제27권 제2호, 한국경영법률학회, 2016. 1, 51면 참조.

5) 외국인 직접투자 현황은 2017년에만 229억불에 달한다. 실제 2007년부터 외국인 직접투자금액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 이에 관하여는 ‘외국인 직접투자 현황’, e-나라지표 참조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140, 2018.4.5. 방문).

6) 2018년 2월 기준 외국인 증권투자 금액은 658조에 달하며 이는 우리나라 상장사 시가총액대비 비중의 32.88%에 달한다. 이에 관하여는 ‘외국인 증권투자 현황’, e-나라지표, 참조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086, 2018.4.5. 방문).

7) 한국일보, “국내증시 외국인 개인투자자 1만명 돌파”, 2014.5.22.(https://goo.gl/XKdMLD, 2018. 4.5. 방문).

8) ‘한미일 투자주체별 주식시장 비중 비교 보도자료’, 금융투자협회, 2015.1.19., (https://goo.gl/dvXykG, 2018.3.30. 방문).

9) 권재열, “주주의 서면투표에 의한 의결권행사”, 상장협연구, 제41호, 한국상장회사협의회, 2000.3, 2면 참조.

주주에게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편의성을 제공한다는 것은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시간과 공간적인 제약을 해소해준다는 점에서 해외투자자들에게 적극적인 유인책이 될 수 있다.[11] 따라서 전자투표제도의 도입을 직접적으로 강제하거나, 인센티브의 도입으로 간접적으로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그러나 전자금융보안사고, 쇼핑, 인터넷 게시판에서 떠도는 루머 등의 문제와 같은 일이 전자투표제도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투자자들에게도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을 받아들이는데 거부감과 저항이 있을 수 있다. 전자투표를 도입한 기업에서 실제 전자투표로 행사된 주식 비율은 2015년 기준 1.62%, 2016년 1.44%로 유의미한 수치라 할 수 없으며, 전자투표를 이용한 주주의 수는 2015년 기준으로 0.24%로 실효성이 의심되는 수준이다.[12] 이에 관해 소액주주들이 의결권행사보다 단기차익추구성향이 더 크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지적도 있다.[13] 하지만 기술도입에 적극적인 투자자들에게는 오히려 좋은 투자유도책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자투표제도의 활성화를 전제로 하여 현행 우리 상법의 쟁점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전자투표제도 의무화 필요성에 대하여 고찰한다. 이를 통하여 주주들의 권리를 더욱 실질적으로 행사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하려 한다. 그리하여 궁극적으로는 투자자들의 유입을 통한 국내기업의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

10) 2016년 4월 기준 30대 대규모 기업집단의 국내법인 1,146개사 중 서면투표제 도입기업은 263개사(22.9%), 전자투표제 도입기업은 28개사(2.4%)이며, 실제 이를 활용한 기업은 서면투표제 33개사(12.6%), 전자투표제활용기업 21개사(75%)로 조사되었다. 이에 관하여는 '30대 대규모 기업집단의 의결권 관련제도 도입현황 및 시사점', 대신경제연구소 2016.10.25. 주간보고서 참조.

11) 김병태, "주주총회의 전자투표제도 '의무화'와 문제점", 기업법연구, 제27권 제3호, 한국기업법학회, 2013.9, 81-82면 참조.

12) 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 위탁계약 체결현황' 2016. 6.

13) 김진회, "전자투표제 의무화 도입에 관한 비판적 검토", KERI Brief, 17-06호, 한국경제연구원, 2017.6, 3-4면 참조.

Ⅱ. 전자투표제도에 관한 상법개정 논의

1. 전자투표제도의 의의

총회에 출석하지 않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법에 관하여 우리 상법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법'을 2009년 개정상법에 반영하였다.[14] 주주가 직접 총회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기존 서면투표 외에 또 다른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식에 관하여 서면투표제도와 전자적 방법을 살펴보면 비슷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다.[15] 두 방법 모두 현장에 참석하지 않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두 제도는 동일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사회결의, 정관규정 등의 제도이용전제요건과 주주확인절차나 기록의 보존과 같은 행사절차가 구별되고 특히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이 행사되기 위해서는 '전자투표관리기관'이 요구된다. 이러한 규정을 신설한 점을 고려하고, 본 전자투표제도가 추후 전자주주총회로 발전하는 과정의 중간단계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두 제도는 구분하여야 한다.[16]

주주총회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한 본 제도는 주주의 권리행사를 용이하게 하고, 회사는 의결권 확보를 용이하게 하여 주주총회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17] 또한 본 제도는 지속적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가상공간에서 전자주주총회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자투표제도의 적극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18]

---

14) 허항진, "개정상법상 전자투표제도와 주요 법적 논점에 대한 소고". 법학연구, 제38호, 한국법학회, 2010, 300면 참조.

15) 곽관훈, "전자투표제도 활성화를 위한 법적과제,", IT와 법연구, 제7집, 경북대학교 IT와 법 연구소, 2013.2, 148면 참조.

16) 정완용, "주주의 의결권행사의 전자화에 관한 고찰," 상사법연구, 제28권 제3호, 한국상사법학회, 2009.11, 380면 참조; 김성문, "주주총회의 전자투표에 관한 고찰", 법학논고, 제34집,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0.10, 49면 참조; 정경영, "전자주주총회의 법리에 관한 시론," 비교사법 제12권 제4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05.12, 467면 참조.

17) 정경영, "전자투표제도 시행에 따른 법적 문제점에 관한 고찰", 증권예탁, 2010-3호, 2010.8, 4면 참조.

2. 전자투표제도의 현황 및 특징

현행 우리 상법은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상법 제368조의4 제1항). 이 조문은 직접 ‘전자투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주주총회가 개최되지만 주주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직접 출석을 반드시 요하지는 않는다는 면을 고려할 때 해당 용어의 사용은 적절해 보인다.[19] 또한 상법 제363조 제1항은 전자적 방식으로 주주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기 위해서는 주주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2009년 개정안이 공포된 후 201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회사법은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다.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위에서 언급한 전자투표제도에 대한 내용 외에도, 제289조 제3조에서 제6조의 내용은 전자적 방법에 의한 공고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상법 제363조 제1항은 전자적 방식으로 주주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기 위해서는 주주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52조의2에는 전자주주명부제도를 규정하였고, 제366조 제1항과 제368조의2 제2항은 의결권불통일행사나 집중투표청구 등에서도 전자문서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우리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자투표제도의 제도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상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은 ‘전자투표를 할 인터넷 주소’와 ‘전자투표를 할 기간’ 등의 상항을 주주들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주주는 해당 사이트를 찾아가 직접 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상법 제368조의 각 조항은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행사를 정한 경우 회사가 주주에게 행사에 필요한 양식과 참고자료를 주주에게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고 하여, 회사가 스스로 전자투표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할 것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

---

18) 곽관훈, “주주총회 활성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방안 연구”, 법무부 연구보고서, 2015. 10, 96-97면 참조; 정완용, 앞의 논문, 379면 참조.

19) 정경영, 앞의 논문, 5면 참조.

러나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전자투표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결권 행사절차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전자투표 관리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고 하여 위임을 허용한다. 전자투표관리기관에 대하여 아직까지 별도로 규정한 내용은 없다. 따라서 전자투표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회사와 사무위탁계약을 체결하여 동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전자투표관리기관으로서 업무를 영위중인 곳은 예탁결제원이 유일하다.[20] 지금까지 전자투표를 실시한 회사는 모두 예탁결제원을 전자투표관리기관으로 선임하여 사무 전반을 위임하여 실시하였다. 이는 전자투표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데 드는 제반비용을 고려하였을 때 그 실익이 크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21]

또한 전자투표활용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것처럼 보였던 이유는 예탁결제원이 예탁주식의 의결권을 대리행사하였던 그림자투표제도의 존재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22] 주주총회의 의사결정이 왜곡된다는 지적에 의하여 2013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이 제도는 폐지되었다. 그러나 성원미달로 총회가 성립되지 않아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지 못할 수 있다는 등 여러 현실적인 지적으로 해당 제도는 2014년 추가적 입법조치를 통해 전자투표를 채택한 기업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다시 활용될 수 있었다. 그 결과 2015년에 전자투표제도를 이용하는 회사 수는 337개사로 2014년 8개사 대비 급증하였다.[23] 그림자투표제도가 완전히 폐지되는 2018년도 주주총회부터는 정식으로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이상인 의결정족수를 갖춰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손쉽게 의결정족수를 늘릴 수 있는 수단인 전자투표시스템은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해당 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회사 의결정족수 확보와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의 용이성을 높일 수 있다.

---

20) 장영수, "전자투표제도와 전자위임장권유제도의 운영현황과 개선과제", 증권법연구, 제16권 제2호, 2015.8, 178면 참조.
21) 김병태, 앞의 논문, 88-89면 참조.
22) 장영수, 앞의 논문, 179면 참조.
23) 장영수, 앞의 논문, 180면 참조.

Ⅲ. 전자투표제도 의무화 필요성 검토

주주총회에서 전자투표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2016년 발의되었다. 해당 개정안은 일정 자산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의 주주가 직접 주주총회에 출석을 하지 않더라도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제도를 의무적으로 반드시 도입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 상법에서 전자투표제의 시행여부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전자투표를 채택한 회사는 많지 않다. 2015년 전자투표를 채택한 기업이 급증하기는 하였지만, 이것은 기업의 자발적 참여라기보다는 그림자투표제를 통하여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 이점을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24] 2013년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2015년 1월에 폐지하려던 그림자투표제가 2017년 말까지 3년간 유예되며 전자투표를 채택한 기업에 한하여 허용되었기 때문이다.

전자투표제를 의무화한다면 회사의 중요한 정책결정에 주주들의 의사를 결집하여 반영할 수 있고, 회사의 경영에 대해 견제·감독할 수 있도록 주주총회의 기능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회사는 주주총회에 소요되는 경비를 절감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전자투표를 법제화하고 있는 국제 입법추세에 대응하여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긍정적 변화를 예상할 수 있다.[25]

이에 대해 전자투표제의 도입으로 인해 주주총회의 회의적인 성격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26] 주주총회는 직접적인 질문과 토론을 거치는 직접적 참여의 장이 되는데, 전자투표로 단순한 의결권 행사가 이루어진다면 오히려 일방적 정보교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2013년 8월 전국경제인연합회 외 18개 단체는 전자투표제도 의무화에 대하여 부정적인

---

24) 황현영,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안의 쟁점별 검토”, 증권법연구, 제18권 제3호, 한국증권법학회, 2017. 12, 22면 참조.

25) 권용현, 한승헌, “전자투표제의 도입 결정요인과 배당정책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 기업의 자사주 매입을 중심으로”, 정보사회와 미디어, 제18권 제3호, 한국정보사회학회, 2017.12, 28-30면 참조.

26) 신석훈, 정승영・김수연, “기업지배구조 관련 상법개정안의 쟁점과 정책방향”, 한국경제연구원, 2013, 65면 참조.

입장을 밝혔다.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무엇보다 현재 서면투표제의 경우에서 소액주주들의 의결권 회신비율이 저조한 것에 비추어 살펴볼 때 전자투표제가 의무화된다고 하더라도 소액주주의 참여율이 높아진다고 볼 수 없다.[27] 다음으로 전자투표의 경우 해킹을 하거나 본인사칭을 할 경우 확인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28] 또한 온라인상에서는 바로 확인할 수 없는 루머에 의하여 의결권행사를 할 수 있기에 투표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29] 전자투표제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지적 외에 기존 주주총회를 강화시키자는 주장도 있다. 결의요건을 강화하여 주주의 참여를 강제적으로 유도하도록 하자는 것이다.[30]

전자투표제 도입에 대한 현실적 필요성에 대한 검토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상당수 기업이 주주총회를 동일한 날에 개최하고 있다. 이 경우 여러 기업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들은 참여할 수가 없는 문제가 있다. 우리 상법은 정족수 미달 문제로 주주총회가 무산되지 않도록 그림자투표제도를 규정하였다. 그러나 기업이 손쉽게 의결정족수를 확보하여 이로 인해 일부 대주주나 경영진의 이익을 위한 결정에 악용된다는 비판을 받았다.[31] 2017년 말 그림자투표제도가 폐지되었다. 보통결의 안건이 통과되기 위하여 전체 주식의 25%가 주주총회에 참석하여야 하고 모두 찬성하여야만 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자투표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32] 전자투표제는 장소의 제약이 없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의사결정참여를 쉽도록 할 수 있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상장사 중 많은 기업이 동일한 날에 주주총회를 열고 있다.[33] 만약 전자투표제도를 상장사가

---

27) 전국경제인연합회 외 18개 단체, “상법 개정 입법예고(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 – ‘13.7.17 법무부 상법 개정 입법예고 –”, 2013.8.23., 19면 참조.

28) 황현영, “주주권 강화를 위한 전자투표제도의 법적 과제”, 법학논총, 제30권 제4호, 한국법정책학회, 2013, 339-340면 참조.

29) 전국경제인연합회 외 18개 단체, 앞의 의견서, 19~20면 참조.

30) 최승재, “주주총회 전자투표 의무화 및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2013 한국경제연구원 정책토론회 세미나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2013. 9. 3. 35면 참조; 김태진, 앞의 자료, 49면 참조.

31) 정준우, “주주의 의결권 행사방법의 편의성 제고와 그 문제점”, 법학연구, 제13집 제3호,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12, 5-6면 참조.

32) 최준선, “상법상 주주총회 결의요건완화를 위한 제언”, 기업법연구, 제27권 제4호, 한국기업법학회, 2013. 12, 85-86면 참조.

33) 올해도 12월 결산 상장사 10곳 중 6곳의 비율로 주총일이 특정 3일에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도입한다면 주주들은 여러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먼저 회사의 의사결정에 소액주주의 참여율을 높여 일부 주주들의 의견으로만 주도되던 운영에 제동을 걸 수 있다. 또한 기존 주주총회에 들어가던 비효율적인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주주의 회사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Ⅳ. 결론에 대신하여: 의사결정과정에서 실질적인 주주의 참여방안 마련

지금까지 전자투표의 의의와 현행 상법제도를 살펴보고, 개정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전자투표제도 의무화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았다. 회사의 주주는 대주주 외에 소액주주, 기관투자자, 외국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투자의 고도화로 인하여 소액주주, 외국인개인투자자 등의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고,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있다. 직접투자를 한 투자자들은 경영참여에 관심을 갖게 된다. 주주들에게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투자 활성화를 위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34] 회사의 중요한 경영현안에 대해 주주들의 의견을 모아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서 주주총회가 있다.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은 회사 경영진인 이사 등을 선임하고 경영을 감시하고, 정관을 변경하는 등 중요한 사항을 결정한다. 따라서 주주총회가 그 소임 및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많은 주주들이 참석하여

한국상장사협의회·코스닥협회에 따르면 24일 기준 주총 일정을 신고한 12월 결산 상장사 1025곳(코스피 401, 코스닥 624) 중 30%가량인 287곳(28%)의 주총일이 3월 23일로 잡혔다. 그 다음으로 3월 28일 204곳(19.9%), 3월 22일 128곳(12.5%) 순이었다. 현재까지 3개 날짜의 주총 비중이 60.5%에 달한 것이다. 이는 지난해 주총이 많이 열렸던 상위 3개 날짜의 주총 비중 70.6%보다는 10%포인트 낮아진 것이지만 일본(48.5%), 미국(10.3%), 영국(6.4%) 등에 비해선 여전히 지나치게 높다 - 조선일보, "'슈퍼주총일' 없어진다더니... 올해도 60% 특정 3일에 몰려", 2018.2.25. (https://goo.gl/sDwP9P, 2018. 4.1. 방문)

34) 정쾌영, "주주총회의 활성화를 위한 과제", 기업법연구, 제30권 제2호, 한국기업법학회, 2016.6, 125-126면 참조.

회사의 경영 현안에 대하여 토론하고, 결론을 도출하여야 한다.[35] 이러한 분위기를 활성화시킴으로써 투자를 활성화시키고 건전한 방향으로 회사가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회사의 규모가 커지고 주주들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주주총회를 활성화시키는데 있어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되었다. 다양하고 많은 주주들이 의결권을 행사하는 데에 현실적인 제약이 등장한 것이다.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반드시 주주총회에 참여하여야 하는 것이다. 우리 상법은 기업 의사결정과정에서 주주의 참여방안을 높이기 위해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하였고, 해당 제도의 도입실적이 미미하자 의무화를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해당 제도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모두 지적되고 있다.

주주총회의 활성화를 가로막는 현실적인 요인도 있다. 예를 들어 12월 결산 상장사는 3월까지 주주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이때 대부분의 회사들은 같은 날 집중적으로 해당 총회를 개최한다. 따라서 이러한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들은 의결권의 행사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36] 또한 그동안 회사들은 소액주주들의 총회장 입장을 거부하거나, 발언기회를 차단하는 방법으로 소수의 제안을 무력화시켰다.[37] 결국 회사는 소수의 대주주 또는 설립자 가족의 의도대로 운영되는 결과가 많다. 회사의 주인은 주주임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의견대로 흘러가는 것이다.[38] 이러한 행태의 반복으로 개인주주는 회사의 발전가능성을 보고 투자하기보다 단기적 주가차익에 관심이 있는 투자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하여 전자투표제도의 의무화는 검토할 만한 이익이 분명히 있다. 다만 앞에서 이야기한 문제점과 관련하여 전자투표제도 도입을 위한 몇 가지 전제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먼저 일반주주들은 대주주에 비하여 정보 및 정보에 대한 접근기회가 적다. 따라서 주주총회의 의제에 대

35) 권종호. "주주총회의 IT화, 그 필요성과 방향성에 관하여", 비교사법, 제11권 제4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04.12, 161-162면 참조.
36) 이지수, "우리나라 주주총회는 왜 활성화되지 못하는가? - 주주총회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 이슈&분석, 2014-1호, 경제개혁연구소, 2014.2, 20-21면 참조.
37) 정쾌영, 앞의 논문, 134면 참조.
38) 이경민,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상법개정안에 대한 소고", 법이론실무연구, 제5권 제1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2017.4, 122-123면 참조.

해 충분한 사전 지식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이사·감사의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주주총회를 여는 경우 상법 제542조의4 제2항은 이사·감사 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거나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이사·감사 후보자에 대한 약력, 경력 등에 관한 기본사항마저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 실정이다.[39] 이러한 정보불균형에 대한 보완을 위하여 주주의 설명청구권이 있다. 현행 상법에서 주주의 설명청구권 등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다. 그러나 학설은 주주는 회사 업무, 주주총회의 결의사항 등에 대해 질문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답변을 임원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는 권리가 내재적으로 있다고 한다.[40] 주주는 이 권리를 주주총회에서 행사한다. 회사가 주주 개개인의 질문사항에 대해 개별적으로 총회 밖의 장소나 온라인상에서 설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전자투표를 하려는 주주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질문사항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하지 않고 투표만 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전자투표제도가 의무화 된다면 이러한 권리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해당 권리를 어떻게 확장하여야 하는가에 대하여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주주들은 의결권을 행사하기 이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의사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전자투표제도는 주주가 현재 해외나 다른 지방에 있거나, 다른 일정의 사유로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간편하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효용성을 지니고 있다. 물론 전자투표의 의무화는 소액주주 보호를 위하여 기업의 효율성을 저해할 뿐이며, 기존 형식적 주주총회의 근본적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다. 그러나 해당 제도는 현실적으로 주주총회에 참여하기 어려운 주주들에게 결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자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의 도입은 해외 투자자에게도 어필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따라서 투자자들의 보호 및 투자 유치를 위하여 전자투표제도 의무화 방안은 적극 검토할 여지가 있다. 다만 전자투표를 둘러

39) 이지수, 앞의 논문, 9면 참조.
40) 정재영, "주주설명청구권의 입법적 고찰", 법학연구, 제23권 제1호,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1981.2, 7-9면 참조.

싸고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기술적 문제와 법적 문제를 보완하고 해결해주어야 그 제도의 도입도 강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투고일 : 2018. 4. 15	심사일 : 2018. 5. 14.	게재확정일 : 2018. 5. 14.

참고문헌

강윤식, 위경우, “국민연금기금의 효율적 주주권 행사 방안”, 기업지배구조리뷰, 제79권 제2호, 한국기업지배구조원, 2015.

곽관훈, “전자투표제도 활성화를 위한 법적과제,”, IT와 법연구, 제7집, 경북대학교 IT와 법 연구소, 2013. 2.

_____, “주주총회 활성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방안 연구”, 법무부 연구보고서, 2015. 10.

권용현, 한승헌, “전자투표제의 도입 결정요인과 배당정책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 기업의 자사주 매입을 중심으로”, 정보사회와 미디어, 제18권 제3호, 한국정보사회학회, 2017. 12.

권재열, “주주의 서면투표에 의한 의결권행사”, 상장협연구, 제41호, 한국상장회사협의회, 2000. 3.

권종호, “엘리엇 사태에 비추어 본 기관투자자의 의결권행사의 쟁점 - 국민연금의 의결권행사와 스튜어드십 코드를 소재로-”, 경영법률, 제27권 제2호, 한국경영법률학회, 2016. 1.

_____, “주주총회의 IT화, 그 필요성과 방향성에 관하여”, 비교사법, 제11권 제4호, 2004.

김병태, “주주총회의 전자투표제도 ‘의무화’와 문제점.” 기업법연구, 제27권 제3호, 한국기업법학회, 2013. 9.

김성문, “주주총회의 전자투표에 관한 고찰”, 법학논고, 제34집,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0. 10.

김진희, “전자투표제 의무화 도입에 관한 비판적 검토”, KERI Brief, 17-06호, 한국경제연구원, 2017. 6.

박종인, “기업지배구조와 이익조정: 최대주주 지분율을 중심으로”, 회계학연구 제28권 제2호, 한국회계학회, 2003. 6.

송종희, 홍승표, 이헌상, “금융위기 전후 한국 상장기업의 자본구조 변화에 대한 연구”, 산업경제연구 제31권 제1호, 2018. 2.

신석훈, 정승영, 김수연, “기업지배구조 관련 상법개정안의 쟁점과 정책방향”, 한국경제연구원, 2013.

이경민,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상법개정안에 대한 소고”, 법이론실무연구, 제5권 제1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2017. 4.

이지수, “우리나라 주주총회는 왜 활성화되지 못하는가? - 주주총회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 이슈&분석, 2014-1호, 경제개혁연구소, 2014. 2.

장영수, “전자투표제도와 전자위임장권유제도의 운영현황과 개선과제”, 증권법연구, 제16권 제2호, 2015. 8.

정경영, “전자주주총회의 법리에 관한 시론,” 비교사법, 제12권 제4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05. 12.

_____, “전자투표제도 시행에 따른 법적 문제점에 관한 고찰”, 증권예탁, 2010-3호, 2010. 8.

정완용, “주주의 의결권행사의 전자화에 관한 고찰,” 상사법연구, 제28권 제3호, 한국상사법학회, 2009. 11.

정재영, “주주설명청구권의 입법적 고찰”, 법학연구, 제23권 제1호,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1981. 2.

정준우, “주주의 의결권 행사방법의 편의성 제고와 그 문제점”, 법학연구, 제13집 제3호,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12.

최승재, “주주총회 전자투표 의무화 및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2013 한국경제연구원 정책토론회 세미나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2013. 9.

최준선, “상법상 주주총회 결의요건완화를 위한 제언”, 기업법연구, 제27권 제4호, 한국기업법학회, 2013. 12.

허항진, “개정상법상 전자투표제도와 주요 법적 논점에 대한 소고”. 법학연구, 제38호, 한국법학회, 2010.

황현영,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안의 쟁점별 검토”, 증권법연구, 제18권 제3호, 한국증권법학회, 2017. 12.

_____, “주주권 강화를 위한 전자투표제도의 법적 과제”, 법학논총, 제30권 제4호, 한국법정책학회, 2013. 12.

전국경제인연합회 외 18개 단체, “상법 개정 입법예고, 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 - ‘13.7.17 법무부 상법 개정 입법예고 -”, 2013. 8. 23.

‘외국인 직접투자 현황’, e-나라지표 참조

_____,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140, 2018. 4. 5. 방문.

‘외국인 증권투자 현황’, e-나라지표, 참조

_____,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086, 2018.4.5. 방문.

조선일보, “‘슈퍼주총일’ 없어진다더니... 올해도 60% 특정 3일에 몰려”, 2018. 2. 25., https://goo.gl/sDwP9P, 2018. 4.1. 방문.

한국일보, “국내증시 외국인 개인투자자 1만명 돌파”, 2014. 5. 22, https://goo.gl/XKdMLD, 2018. 4. 5. 방문.

‘한미일 투자주체별 주식시장 비중 비교 보도자료’, 금융투자협회, 2015. 1. 19., , https://goo.gl/dvXykG, 2018. 3. 30. 방문.

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 위탁계약 체결현황’, 2016. 6.

‘30대 대규모 기업집단의 의결권 관련제도 도입현황 및 시사점’, 대신경제연구소 주간보고서, 2016. 10. 25.

<국문초록>

전자투표제도의 의무화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 검토

박 은 영

기업지배구조의 복잡화로 인하여 주주들의 의결권행사가 제한되는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주주총회가 유명무실해지고, 회사 경영진과 일부 대주주들만의 이익만을 대변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고 주주들의 경영참여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전자투표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

2013년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그림자투표제도의 폐지가 2017년 말에 이루어졌다. 따라서 주주총회 의결정족수를 채우기 위하여 주주총회 활성화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할 필요가 있다. 전자투표제도는 시간 및 공간의 제약 없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제도의 활성화를 통하여 기업은 주주총회의 활성화와 실효성을 쉽게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상법에 전자투표제도가 도입된 지 수년이 흘렀지만 아직까지 실효성 있는 도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전자투표제도 의무화에 대한 개정안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해당 제도를 강제화한다고 하여도 주주총회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는 지적도 많이 있다. 또한 온라인의 특성상 본인확인이 명확히 되지 않을 수 있고, 미확인 루머에 의한 의결권행사가 있을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이와 같이 전자투표의 의무화로 인하여 기업의 부담이 증가하고, 효율성 저하가 일어날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단기간 거래차익에 치중하는 국내 개인투자자들의 의식전환과 해외 개인투자자들의 적극적 국내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전자투표제도 의무화는 검토할 실익이 있다. 다만 전자투표제도를 둘러싸고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기술적 문제와 법적 문제를 사전에 보완하고 해결하여야 그 제도의 도입도 강

제할 수 있다.

주제어: 전자투표제도, 주주총회, 의결권, 전자투표, 상법개정안

<Abstract>

A Study on the Necessity and Revitalization of the Mandatory Electronic Voting System

Park, Eun-Young

Due to the complexity of the corporate governance, there is an issue on the restriction of the voting right of stockholders. Consequently, a general meeting of stockholders becomes nominal, so that this might merely represent the corporate management and some of the major shareholders. In order to improve this circumstances and guarantee shareholders to have the right to participate in management, there is a suggestion of an electronic voting system.

According to the amendment of the capital market law in 2013, the abolition of the shadow voting was completed at the end of the 2017. Therefore, for the sake of forming a quorum of a general meeting of stockholders, it is necessary to take the measure for the revitalization of a general meeting. The electronic voting makes stockholders exercise their vote without any restriction of time and space. This also makes a corporate sure of invigoration and effectiveness of a general meeting of stockholders. However, effectiveness of electronic voting system is not yet sufficient now, even though several years have passed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system in the commercial law. The discussion on the amendment of mandatory electronic voting system is ongoing.

In spite of mandatory electronic voting, there is some doubt about

revitalization of a general meeting, though. Moreover, on-line by its nature is likely to make it difficult to confirm identification, and there might be an exercise of vote by unconfirmed rumor. For this reason,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mandatory electronic voting is not only placing additional pressures on businesses, but also reducing efficiency of it.

However, the introduction of mandatory electronic voting system is of any practical use for conversion of awareness of some domestic individual investors who are only concentrating on a short-term profit margin as well as revitalization of positive domestic investment. The introduction of this system might be compulsory unless otherwise compensated in advance for the technical and legal issues by means of the electronic voting system.

Key Word: electronic voting system, a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the right to vote, electronic voting, amendment of commercial act